

제 호

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

1. 기관명:

2. 사업자등록번호:

3. 성명(대표자): (생년월일:)

4. 주소: (전화번호:)

5. 사무소 소재지:

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

직인